

食品衛生管理의 現況과 對策(下)

— 畜産加工食品의 衛生管理를 中心으로 —

申 光 淳*

2) 西 独

西独 各급기관의 獸醫公衆保健活動

各급기관	주 관 부 처	업 무	전문직수 (상위직)
연방정부	연방청년가족 및 보건성	동물성식품의 위생과 방역 동물용 의약품의 단속 수의사의 교육 소비자 보호	10
	연방보건청 수의학연구소 (Robert Von Osterdark 연구소)	수의공중보건활동의 발전에 과학적 뒷받침을 하는 중앙연구소	30
	독일의학 정보연구소(DIMDI)	Medullas, Index Veterinarius와 Biological Abstract 와의 협력하의 국제적 정보교환	2
	식량, 농업, 임업성	가축위생 가축질병의 방역 동물의 보호	9
	연방동물 바이러스병 연구소	동물의 바이러스성질환에 대한 중앙연구소	25
주 정 부 (11주)	수의공중보건국 소속 농업성 5주 보건성 5주 내무성 1주	주 정부는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연방법률을 집행함	각주 3~5
지방정부	지방사무소(서독에는 30개의 지방구역이 있음)	가축보건계획에 있어서의 수의공중보건 활동 식품위생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조언 및 교육	각지방 2~3
	군(서독에는 542개군이 있음) 가축보건위생소(30개)	모든 수의공중보건활동 동물성 식품의 검사	각군1~3 220
	개업수의사	수의공중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개업수의사	4,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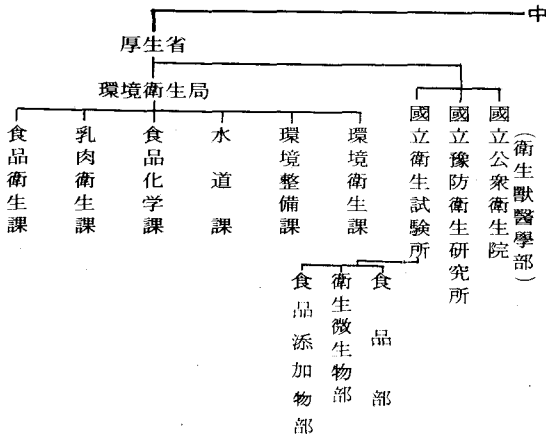
3) 日 本

●法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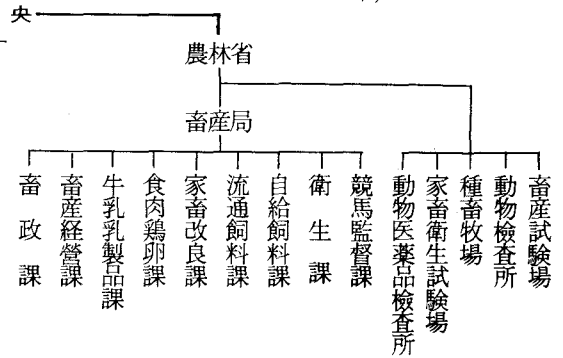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獸醫科大學

- 厚生省所管
 - 食品衛生法 (1947年)
 - 屠畜場法 (1953年)
 - 乳 및 乳製品의 成分規格 등에 關한 省令 (1951年)
 - 斃獸處理場 등에 關한 法律 (1948年)
 - 狂犬病豫防法 (1950年)

●行政機構



- 農林省所管
 - 獸醫師法 (1949年)
 - 家畜伝染病予防法 (1951年)
 - 家畜保健衛生所法 (1950年)
 - 飼料의 安全性的 確保 및 品質改善에 關한 法律 (1953→改正：1975年)



4. 食品管理改善에 대한 提案

1) 行政體系의 整備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現行 食品管理體系는 管掌部署와 規制法律이 多元的이다. 앞으로 農畜水産食品의 管理가 保健社會部로 移管된다하나 畜産食品의 경우 生畜의 生産, 屠畜檢査 및 乳牛의 衛生管理, 原乳의 集乳管理 등은 現行대로 農水産部에서 관장하고 製品加工段階만 담당한다는 것은 完全한 一元化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2) 食品管理를 위한 巨視的이며 綜合的인 對策이 樹立되어야 한다.

食品管理는 原料食品의 生産에서부터 製造加工에 이르는 管理와 流通 消費과정에서의 衛生的인 管理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徹底的한 管理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食品의 原料인 農畜水産物의 生産단계에서 부터 食品學的, 衛生學的인 管理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基本이다. 그러기 위한 學術的인 資料와 적절한 行政指導가 아쉬운 形편이다. 食品管理庁(局)의 新設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3) 食品行政의 科學化가 時急하다.

食品管理行政은 許可業務, 指導監督, 檢定業務가 三位一體로 이루어져야만 食品管理가 效果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食品管理의 行政機構가 여러 部處에 散在하여 非效率的이며 자주 混線을 빚고 있다.

現制度下에선 部處間에 情報交換이 없으며, 中央部署도 점차 機構가 縮小되어 業務遂行에 많은 支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保社部의 경우 衛生局(1970) 食品1課와 2課에 속해 있던 業務가 機構統合으로 業務食品局傘下의 食品衛生課(1981年)로 縮小되었다.

地方行政機關인 各市道에도 과거에는 衛生課 등이 있었으나 現재는 專擔部署가 없으며, 一線執行機關의 體系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保健行政의 末端機關인 保健所에서 專門職種の 公務員에 의해 食品管理業務가 執行되어 오던 것이 1976年 市·區·郡으로 그 業務가 移管되므로서 非專門職種인 一般行政職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4) 專門職을 制度的으로 活用해야 한다.

나날이 發展되는 科學分野에서 專門職種の 必要性은 날로 커가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舊態依然하게 非專門系出身에 의해 行政이 執行되고 있음은 그 落後性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現行 食品衛生法上 食品衛生監視員 및 食品衛生管理人(製造加工管理責任者)의 資格은 專門大學 또는 大學에서 醫學, 藥學, 獸醫學, 畜産學, 水産製造學, 農産製造學, 農化學, 食品加工學, 食品營養學, 衛生學을 專攻했거나 食品衛生行政에 3年以上 從事한 者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食品衛生管理人是 除外)

監視員의 業務는 食品衛生營業施設에 대한 指導監督과 食品添加物, 器具, 容器, 包裝 등의 取去檢査에 從事하는 것이다.

保社部の 方針이 不良食品製造를 源泉的으로 封鎖하기 위해 監視指導業務의 方法을 從來의 外形的인 施設調查위주에서 적합한 原料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與否와 製造工程別로 衛生管理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重點적으로 점검하도록 方向을 전환하였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食品衛生法과 食品添加物의 規格基準, 試驗方法과 製造工程까지 熟知해야 하는 高度의 知識을 要하는 것이다.

현재 全國的으로 900餘名의 食品衛生監視員이 全體製造業所와 料食業所를 指導 監督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더욱이 一線市郡에는 不條理要因除去의 一環으로 1年이상 同一職에 從事하는 일이 드물고 他業務에 差출하는 등 監視員의 專門化에 逆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5) 業界의 自律的管理體系가 바람직하다.

족주하는 業務量과 急速히 발전하는 食品工業의 發展에 알맞는 食品管理를 하려면 人力·豫算不足에 허덕이는 行政當局으로는 無理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하는 方法의 하나는 健全한 業種團體를 法人으로 育成해서 活用하는 것이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全國에 6千餘名의 食品衛生監視員이 配置되어 있고 別途로 食品衛生協會에 75,000名의 自律指導員이 監視·指導業務

를 逐行하고 있다.

6) 食品規格은 效率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食品規格을 지나치게 細分化하거나 品目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食品衛生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이지 사소한 營養成分의 配合比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自家品質規格基準에 配合比表示를 義務化하고 있으며, 모든 食品製造品目의 許可를 얻기 위해 原料配合比를 明示하게 되어 있다.

工程改善, 原料代替, 技術開發 등에 의한 新製品의 제조와 판매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規定은 食品業界의 Know how 公開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類似製品에 대한 品目許可와 自家規格申告도 業所와 行政의 業務量을 加重시키고 있다.

衛生上 중요한 것은 意圖的으로 사용되는 特定添加物의 使用量이다. 許容品目과 許容量以內의 使用與否를 감시 통제하면 되는 것이다. 添加物의 使用量을 表示하는 것보다는 使用品目만을 表示하는 것이 국제적인 趨勢이다.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食品도 國際化를 外面할 길이 없다.

이미 指定된 添加物의 基準變更 또는 使用禁止措置, 새 添加物의 新規指定 등을 위해 外國과 의 情報交換과 研究事業이 이루어져야 한다.

添加物이 美國(2,500種), 西獨(370種), 日本(347)에 비해 우리나라는 指定品目數가 적다(한국 326種). 先進國에서 指定된 品目도 우리나라에선 未指定品이 많아 貿易去來上 문제점이 많다. 食品添加物에 대한 國際的인 動向과 國內政策을 調和시켜 輸入食品監視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國際食品規格委員會(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등 國際機構와의 交流가 바람직하다.

7) 許可管理業務의 簡便化가 要望된다.

許可機關이 保社部, 農水産部, 國稅廳, 專賣

廳으로 多元化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나 業種의 分類에도 문제가 있다.

製造工程 및 用途가 類似한데도 여러가지 營業許可를 받아야 하므로 許可管理에 混線이 일어나고 民願人의 不便이 크고 衛生監視에 混亂이 惹起되는 일이 있다.

8) 食品原料需給에 대한 行政的制約이 國產品의 質的向上과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키고 있다.

貿易自由化가 進行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많은 種類의 食品原資材의 輸入이 制限되고 있어 健全한 食品産業이 育成되지 못하고 있다.

9) 保健院等 研究機關의 業務가 正常化되어야 한다.

食品衛生的 政策樹立을 위한 基本資料와 國民保健向上을 위한 研究가 본연의 任務인 保健院 家畜衛生研究所 등에서 雜多한 分析 業務 등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法人體인 食品分析센터 등에서 分析業務 등은 모두 처리하며 그 data를 모두 公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民間團體의 設立운영으로 檢定業務와 研究業務의 合理的인 운영을 꾀하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WHO가 勸告하고 있는 食品의 汚染物 質許容基準의 設定을 위한 調查研究가 時急한

것이다.

10) 各級要員의 再教育이 必要하다.

날로 발전하는 食品科學의 分野에서 業務를 야 할 것이다.

研究機關에선 營養改善, 新分析法開發, 食中毒豫防, 添加物에 대한 研究 등이 長期的 眼目

11) 啓蒙弘報事業이 併行되어야 한다.

消費者인 國民들이 食品에 대해 올바른 知識이 要求된다. 食品과 營養에 대한 偏見과 誤解는 國民의 保健과 食品産業에 미치는 惡影響이 逐行하는 行政要員이나 食品衛生監視員, 管理人 등에게 變更된 法規 및 規格과 食品衛生的 새로운 情報를 教育한다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時代的 要請으로 볼 수 있다.

매우 크다. 加工食品은 有害한 것으로 몰고 가는 一部人士들로 인해 食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흔들리고 있는 事例가 많다. 一例를 들면 三白有害論과 같은 것이다.

消費者의 認識向上을 위한 啓蒙弘報도 食品管理를 合理的으로 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事業은 官과 業界 그리고 學界가 衆知를 모아 積極的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